

울산지방법원 2023. 6. 16 선고 2021가단1073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

피 고 1. B

2. C(일본명: D)

3. E

4. F

5. G

6. H

변 론 종 결 2023. 5. 12.

판 결 선 고 2023. 6. 16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B은 10,995,000원, 피고 C, E는 각 7,330,333원, 피고 F, G, H은 각 2,443,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22. 10. 23.부터, 피고 C는 2022. 11. 28.부터, 피고 E, F은 각 2022. 10. 23.부터, 피고 G, H은 각 2023. 2. 18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B, C, E, F에 대하여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G, H에 대하여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황운서

별지